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2. 4 선고 2024나106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2. 4 선고 2024나1060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121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하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호 담당변호사 장준태

변론 종결2024. 10. 2.

판결 선고2024. 12. 4.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12179 판결

주문

-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이 사건 소 중 184,466,927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437,898,081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437,898,0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622,365,008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2,365,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2행의 "약속어음"을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7, 8행의 "그 시가의 합계액은 1,249,501,400원(= 547,414,000원 + 702,087,400원)이다."를 "그 시가의 합계액은 1,249,501,400원(= 547,414,000원 +

702,087,400원)이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95,136,392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과

1) C의 채권자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Q, R는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받고 각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P	2023가단 63927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을 114,419,906원 한도 내에서 취소② 114,419,906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	2024. 5. 31.	2024. 6. 25.
2	Q	2023가단 71133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을 32,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② 32,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한 돈	2024. 3. 26.	2024. 4. 16.
3	R	2023가단 70321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을 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② 70,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한 돈	2024. 3. 12.	2024. 4. 24.

2) 피고는 위 각 가액배상판결에 따른 이행 등으로 ① 2024. 6. 28. P에 137,000,000원을, ② 2024. 4. 9. Q에게 32,000,000원을, ③ 2024. 9. 30. R에게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15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6, 8, 9, 11호증"으로, 같은 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쓰며, 16행의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당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7행의 "2."를 "3."으로, 7쪽 6행의 "3."을 "4."로 각 고쳐 쓴다.

"2.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

가.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Q에게 2024. 4. 9. 32,000,000원을,

R에게 2024. 9. 30.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P에 2024. 6. 28. 지급한 137,000,000원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부분은 114,466,927원[= 114,419,906원 + 47,021원(= 114,419,906원 × 5% × 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총 216,466,927원(= 32,000,000원 + 70,000,000원 + 114,466,927원)은 이미 가액의 회복을 마쳐 C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중 32,000,000원 부분만을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184,466,927원(= 70,000,000원 + 114,466,927원)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동액 상당의 범위에서 중첩되므로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피고는 'C의 채권자인 S가 2023. 11. 14. 제주지방법원 2023카단12617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및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다가 2024. 7. 9. 피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처분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230,000,000원도 가액의 회복을 마친 부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오로지 형성의 소인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이행의 소인 원상회복 청구로만 행사할 수 있고 특히 후자의 청구 중 가액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위 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받은 후 수익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변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변제받은 부분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4쪽 7행의 "1,249,501,400원인 사실"을 "1,249,501,400원이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95,136,392원인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0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 합계액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8쪽 17행부터 9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보전채권에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2. 8. 16.부터 이 사건 2024. 9.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76,241,095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9쪽 21행, 10쪽 1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합계액은 654,365,008원(= 1,249,501,400원 - 595,136,392원)이 된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합계액은 654,365,008원(= 1,249,501,400원 - 595,136,392원)이 되는데, 그중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자취소소송을 거쳐 가액의 회복을 마친 216,466,927원을 공제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공동담보가액은 437,898,081원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쪽 2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600,000,000원과 현재 잔존하는 공동담보가액 437,898,081원 사이에 더 적은 금액인 437,898,081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그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437,898,081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 437,898,0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184,466,927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이재신

판사강민수

판사강미혜

별지